민사법률제도에 대한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의 견해비판

최 일 복

현시기 제국주의반동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켜 쇠퇴몰락해가고있는 자본 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반동적이며 기만적인 리론들을 조작 류포시키고있다.

제국주의반동들이 조작류포시키고있는 반동적인 법학리론들가운데는 지난 세기 60년 대에 부르죠아법학계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되고 그후 세계적인 범위에로 급속히 퍼 져나가고있는 《경제분석법학》도 있다.

경제분석법학은 현대자본주의법학계에서 명칭상《법경제학》,《법의 경제적분석》,《법 경제운동》,《법률경제학》등 여러가지로 표현되고있으나 다같이 법률적현상들을 경제학적 인 방법론을 통해서 설명하는것으로서 《경제분석법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에 속한다.

《경제분석법학》을 대표한다고 하는 부르죠아법학자들이 많고 그들나름대로의 여러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그에 관통되여있는 리론적기초는 경제학의 리론과 관점, 방법을 법학연구에 도입하여 《효익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법률제도와 그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법률제도자체를 개혁하자는것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현존하는 부르죠아법률제도를 저들의 리익실현에 보다 더 유리하게 개변해나가기 위한 대독점자본가계급의 요구를 《과학리론적》으로 대변한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경제가 인간의 사회적본성과 대립되어있다면 사회주의계획경제는 사회적인 간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고있습니다.》(《김정일전집》제3권 41폐지)

자본주의경제는 자본가계급의 리윤추구를 보장해주기 위한 리윤경제로서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대립되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는 반인민적인 경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자들은 비과학적인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인간의 사회적본성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자본주의리윤경제제도, 자본주의민사법률제도 를 변호하고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자본주의의 반인민적인 민사법률제도를 변호하는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적견해들가운데서 대표적인 몇가지 론조들에 대하여 계급적견지에서 분석비판하려고 하다.

재산법률제도에 대한 경제분석법학적견해

민사법률제도에 대한 경제분석법학적견해의 부르죠아적성격, 반인민적성격은 재산법률제도에 관한 론의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재산법률제도에 대한 경제분석법학적견해들은 무엇보다먼저 재산법률제도의 《보편성》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자본주의의 경제적기초인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합리화하고 그 반인민적성격을 은폐하고있다.

재산권의 《보편성》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자연부원에 대한 소유권자로는 누구나 나설수 있으며 모든 생산수단은 반드시 개별적인 당사자들의 소유로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해당 사회경제제도의 계급적성격을 가르는 기본척도이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인가 전인민적소유인가에 따라 해당 사회경제제도가 반동적인것으로도 되고 인민적인것으로도 된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자기의 경제적기초로 하고있는 사회이며 이 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자본주의적착취의 사회적근원이다. 그리므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는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된다. 그러나 반동적인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자들은 자연부원에 대한 《보편적소유》의 원칙에서 재산법률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위선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그속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합리화하고 그 착취적성격을 교활하게 은폐하고있다.

경제분석법학리론의 가장 대표적인 제창자인 미국 시카고종합대학 법학교수 리챠드 퍼스너는 《법의 경제적분석》이라는 글에서 재산법은 실제상 중요한 경제적기능을 가지고있으며 재산법률규칙에 대한 설정은 다 사람들이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자극하려는 근본목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러한 효률적인 재산권리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는데 그 첫번째가 바로 《보편성》이라는것이다.

그는 재산법률제도의 《보편성》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모든 자연부원은 누구인가에 의하여 점유되여야 한다. 해빛과 같이 자연부원이 너무도 충분하여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고 매 사람이 대량적으로 소비할수 있는 그러한 자원은 례외로 된다.》라고설교하였다.

퍼스너의 이러한 견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 특히 모든 자연부원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나 다 가질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라는것으로서 부르죠아적사적소유제도의 반인민적성격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론의이다.

지어 허버트 호븐캠프를 비롯한 반동학자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로골적으로 정당화하고있다. 그는 모든 생산수단들이 개별적인 당사들에게 할당되여있다면 다른 외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며 모든 경제거래가 효률적일것이라고 하면서 착취의 근원인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로골적으로 비호하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합리화하는 경제분석법학적견해는 그것이 은폐적이든 로골적이든 결국에는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제도를 합리화하고 미화분식하는 궤변에 지나 지 않는다.

퍼스너가 말하는 《모든 자연부원에 대한 어떤 사람의 점유》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들의 사적소유를 의미하며 그에 대한 기만적인 표현이다. 허버트 호븐캠프가 생산수단이 개별적당사자들에게 할당되여야 한다고 떠벌이는것도 역시 자본 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자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누구나 자연부원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할수 있는것처럼 기만하지만 사실 막대한 리윤을 가져다주고 그 개발원가가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자연부원에 대한 소유권은 많은 자본을 독차지하고있는 독점자본가들만이 획득할수 있는 특권이다.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자들은 소유관계와 관련하여서도 의도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와 소비재산에 대한 소유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소유관계에서의 계급적본질 을 은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은 소유자로서 《평등》한 관계에 있는듯이 기만하고있다. 그리고 소유대상으로서의 생산수단에 대하여서는 내놓고 말하면서도 그 소유자의 계급적 성격에 대하여서는 외면하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떠나서 자본주의적상품생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하에서 자본가와 고용로동자사이의 착취관계가 발생하게 되 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자는 착취자로, 고용로동자는 피착취자로 된다. 이것은 생산수 단에 대한 자본주의적사적소유 그자체가 철저히 로동에 대한 착취의 전제로 되고있다 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재산법률제도의 보편성에 대하여 떠벌이는 경제분석법학적견해는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인민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막대한 치부를 일삼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변호 하는 반동적견해이다.

재산법률제도에 대한 경제분석법학적견해들은 다음으로 재산권의 《배타성》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사적소유를 철저히 보호할것을 설교하고있다.

재산권의 《배타성》이란 일정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의 권리는 거래나 증여를 제 외하고는 그 무엇에 의하여서도 침해되여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수 없다는 것이다.

반동적인 미국의 경제분석법학자 리챠드 퍼스너는 효률적인 재산법률제도의 두번째 기준은 《배타성》이라고 하면서 사회성원들은 사회적자원을 사용하는데서 서로 배타적인 권리를 가져야만이 전사회적범위에서 부의 증대를 가져올수 있다고 떠벌이고있다.

그는 만약 어떤 한뙈기의 땅이라도 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그 땅에 접근 하는것을 배제할수 있어야만 개인은 경작이나 기타 조치를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 하려고 노력할것이라고 력설하면서 자본주의적사적소유를 제도적으로 철저히 보호할것을 제창한다.

재산법률제도의 배타적성격에 대한 견해는 경제분석법학자 로날드 코스에 의하여서 도 제기되였다. 코스는 법이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효익원리》에 근거하여 확정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방법중의 하나로서 재산규칙에 대하여 력설하고있다.

그가 말하는 재산규칙이란 효익을 최대화할수 있는 원칙에서 권리소유자가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을 금지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는것으로서 퍼스너의 재산법률제도의 배타성에 대한 견해와 본질상 같다.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자들이 재산법률제도의 배타적성격에 대하여 설교하는 근본목적은 《효익의 극대화》라는 간판밑에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막대한 재부를 축적하는 자본가들의 사적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리론적구실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경제분석법학자들이 내세우고있는 《가치의 극대화, 효익의 극대화》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자본가계급의 경제적리익의 극대화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재부를 창조하는데 리용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자본가계급이며 광범한 근로대중은 로동력밖 에 가진것이 없기때문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경제관계의 다른 모든 내용들을 규정한다. 특히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따라 생산물의 분배관계가 규정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력밖에 가진것이 없는 근로대중은 자기가 창조한 생산물의 대부분을 자본가계급에게 무상으로 빼앗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효익의극대화》는 생산수단을 틀어쥔 자본가계급에 한해서만 의의가 있는것이며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거나 실업으로 인하여 그나마도 받지 못하는 근로대중에게는 그 어떤 리익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민법을 비롯한 자본주의법률제도에서는 소유권이 배타적권리로 되여야 한다는 견해에 기초하여 착취의 물질적수단인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소 유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있으며 사적소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엄격한 형사적 및 민사적책임을 지우고있다.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자들이 재산법률제도의 배타적성격에 대하여 떠벌이는것은 재 산법률제도를 비롯한 현존 자본주의경제제도가 《효익극대화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된 다는 명목아래 자본주의착취제도를 변호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재산법률제도에 대한 경제분석법학적견해들은 다음으로 재산권의 《양도가능성》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독점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적요구실현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제국주의국가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반동정책을 합리화하고있다.

재산권의 《양도가능성》이란 한마디로 재산권이 한 소유권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될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리챠드 퍼스너는 효률적인 재산법률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준의 하나가 양도가능성이라고 하면서 만일 재산권이 양도될수 없다면 자연부원은 임의의 교환을 통하여 가치가적은 리용에서 보다 큰 가치가 있는 리용에로 이전되지 못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그는 재산권은 배타적이여야 하지만 그것으로써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양도가능하여야 한다, 가치극대화는 재산권을 보다 생산적으로, 효률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양도할것을 요구한다고 제창하였다.

반동학자 로날드 코스 역시 재산권의 《양도가능성》에 대하여 력설하였다. 그는 법이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효익원리에 근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책임규칙을 적용하는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책임규칙은 권리없는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가격으로 손해배상원칙에 따라 타인이 가지고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매하는것을 허용하는 규칙이라는것이다.

재산권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법학적견해는 독점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적요구실현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현대 국가독점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독점보호정책을 합리화하는 반동적견해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가들의 요구와 리익만이 절대시되는 사회로서 국가의 모든 정책이 독점자본가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수립되고 실현된다.

생산수단을 비롯한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있는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적목적은 중소자본가들의 리익을 침해하게 되며 독점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사회적재부들이 독점자본의 수중에로 집중되고 병합되게 된다.

독점자본가들은 최대한의 독점적고률리윤을 얻기 위하여 자본규모의 확대와 값눅은 원료자재의 구입, 판로가 보장된 상품에 대한 대량생산 등의 각종 공간들을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고 리용한다.

독점적인 고률리윤을 추구하는 독점자본의 이러한 요구는 바로 독점자본의 리익을 절대화하는 자본주의국가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법률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되게 된다.

현실적으로 많은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각종 명목의 세금징수와 국채발행을 비롯한 여러 공간을 통하여 인민들로부터 거두어들여 조성한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으로 경제위 기에 허덕이는 독점자본가들의 자금수요를 충당시켜주고있다. 이와 함께 독점기업체들이 사채, 수형을 비롯한 각종 유가증권들을 발행하여 막대한 자본을 자기 수중에 장악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국가의 반동적인 재정금융정책에 의하여 많은 화폐소유자들의 화폐에 대한 재산권이 화폐자본에 대한 극소수 독점자본가들의 재 산권으로 이전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국가의 독점보호정책으로 인하여 독점자본가들에게 이전되는 화폐재산은 자본의 유기적구성의 한 부분인 화폐자본으로 이전되여 독점기업의 자본규모는 더욱더 팽창되게 한다. 자본의 규모가 클수록 독점적고률리윤은 량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것은 착취률의 상승을 가져온다.

뿐만아니라 제국주의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경제의 군사화정책을 통하여 독점자본가들에게 강점지역의 자원을 무상 또는 헐값으로 략탈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며 군수품제작에 필요한 모든 원료, 자재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여줌으로써 독점 자본가들로 하여금 독점적고률리윤을 획득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하여준다.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자들은 이러한 국가의 독점보호정책아래서 독점자본가들이 감행하는 자국내 인민들뿐만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사회적효익극대화를 위한 재산권의 이전현상으로 미화분식하고있는것이다.

재산권의 양도를 통하여 효익극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경제분석법학자들의 론조들은 어느것이나 다 독점자본가들의 리익만을 위한 반동리론이며 제국주의국가의 략탈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것으로 하여 《효익극대화를 위한 재산권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부르죠아 법학계에서도 《철저히 부자들을 위한 리론》이라는 비평까지 받고있다.

반동학자들이 아무리 재산권의 양도가능성보장을 통하여 효률적인 재산법률제도를 확립하고 《효익의 극대화》를 보장한다고 떠벌이여도 그 반동적목적을 가리울수 없다.

채무제도에 대한 경제분석법학적견해

민사법률제도에 대한 경제분석법학적견해의 부르죠아적성격, 반인민적성격은 계약에 기초한 채무제도에 관한 론의들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계약에 기초한 채무제도에 대한 경제분석법학적견해들은 어느것이나 다 계약에 기초 한 채무불리행시 효률성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독점의 전횡과 확대를 합리화하고 로동조 건개선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데 복무하는 반동적인 견해들이다.

미국경제분석법학의 대표자인 퍼스너는 계약의 효률적위반에 대하여 론의하면서 당 사자들이 이미 체결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도 그 결 과가 《효률》적이라면 그것은 합리적이며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례로 두 계약당사자들중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얻은 리득으로 상대편당사 자의 손해를 보상하고도 계약의 정상적인 리행으로 얻는 리득보다 큰 리득을 얻는다면 그때의 계약위반은 효률적이며 법적으로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계약위반자가 계약에 기초한 채무와 관련하여 계약자체를 파기하거나 합의한 사항을 제멋대로 위반하여도 더 큰 리익을 얻을수만 있다면 그러한 계약위반에 대하여서 는 효률적인것으로 인정하고 적극 장려할것을 설교하는 리론이다.

그러면 계약위반 다시말하여 보다 더 큰 리익을 위하여 계약상채무를 전혀 리행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조건에 맞지 않게 리행하는 행위의 효률성에 대하여 운운하는 경제분석 법학자들의 진의도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바로 무제한한 독점적고률리윤획득을 자기의 탐욕적본성으로 하는 거대독점 자본가들의 전횡과 독단을 효률이라는 미사려구로 합리화하고 인민대중의 투쟁의식을 마 비시키려는데 있다.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자들이 떠벌이는 《계약의 효률적위반론》은 우선 자본주의기업체들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철저히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실현에 복무하고있다. 그것은 자본주의기업체들사이의 계약관계에서 계약위반으로 하여 효률적결과를 달성할수 있는 계약위반자로서는 오직 거대독점자본가들밖에 될수 없기때문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계약의 효률적위반에 관한 경제분석법학적견해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통하여서도 설명될수 있다.

실례로 두 당사자가 일종의 민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리행을 통하여 서로가 각각 p 와 m만 한 량의 리득을 얻을수 있다고 가정하자.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한편당사자가 상대편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고 보다 큰리익을 얻을수 있는 또 다른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리행함으로써 p'만한 리익을 얻을수 있다. 한편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선행계약의 위반자의 계약위반으로 m'만 한 손해를 입을수 있다.

이때 계약위반행위가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자들이 떠벌이는 선행한 계약의 효률적위반 다시말하여 채무의 효률적불리행으로 인정되자면 p´≧p+m´이여야 한다. 이것은 선행계약의 위반자가 계약위반이후의 리윤액 p´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의 손해보상액 m´를 지불하고도 p이상의 리득을 얻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될 때 이른바 효률적인 계약위반으로 된다는것이 바로 경제분석법학적론의이다.

여기서 손해보상액수인 m'는 줄어든 손해와 더 늘어나야 할 손해의 합으로 계산되므로 언제나 m보다 크게 된다. 그러므로 p'>p+m이다.

이 계산식은 계약위반을 전후하여 두 당사자사이의 리익과 손실관계를 표현한다.

계산식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계약위반후에 얻는 리득으로 선행계약을 정상적으로 리행하였을 때 자신과 상대편당사자의 리득을 초과하여 충당한다는것은 계약위반당사자가 한번의 계약리행으로 얻는 리윤이 매우 막대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한번의 거래행위로 많은 리윤을 얻어내려면 당사자들이 해당 거래에 많은 자본을 투자할수 있어야 할뿐아니라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여야만 한다.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독점적인 고률리윤을 획득하는 거대독점기업이 아니고서는 이 미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없으며 또 계약상의무를 위반하고도 상대편당사자가 획득할 리윤을 포함한 손해량의 전부를 보상하고도 자기 기업의 리윤량을 계약위반전보다 더 끌어올릴수 없는것이다.

결국 경제분석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계약의 효률적위반》이란 대독점기업체들의 고률 리윤추구행위를 이른바 전사회적범위에서의 부의 증대에 이바지하는 《효률적인 행위》로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론의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보다 큰 리윤획득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것이 자본가계급의 탐욕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자본주의기업체들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우와같은 계약의 효률적위반에 적합한 계약위반자로서는 독점기업으로밖에 될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자명한 리치이다.

현실적으로 리윤경제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모든 자본주의독점기업 들은 나라의 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틀어쥐고 보다 더 많은 리윤을 추구하여 그 어떤 행 위도 서슴지 않고있으며 계약위반과 같은것은 그 하나의 표현으로서 너무나도 보편적이 고 례사로운것으로 되고있다.

아무리 독점기업들이 계약위반으로 더 큰 리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일개 독점 기업에로의 더 많은 자본이 집중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모든 거래활동이 하 나의 고리처럼 고도로 치밀하게 련결되여 이루어지는 현대의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어느 한 거래의 비정상적인 결과는 그와 련관된 많은 기업체들사이의 거래에 부정적영향을 미 치며 많은 거래자들이 련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전사회적범위에서 독점의 지배 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한편 경제거래관계에 들어섰던 많은 사람들이 재산적손 해를 보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더욱더 심화되고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이 그대로 증명해주고있다.

이처럼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자들이 떠벌이는 계약의 효률적위반론은 독점기업들의 전횡과 독단을 합리화하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독점변호론이다.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자들이 떠벌이는 《계약의 효률적위반론》은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의식발전을 저애하고 자본주의경제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기만적인 리론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자들은 자본주의기업들과 고용로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로동자로 되며 자기의 로동력을 팔아 받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간다. 로동력이 상품으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자와 자본가사이의 고용로동계약은 상품으로서의로동력을 팔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일종의 매매계약이다. 그러나 착취적이며 탐욕적본성을 가지고있는 자본가들은 고용로동계약에 반영되여있는 계약사항들을 지키지 않는다. 기업의 리윤이 적거나 없다고 하여 혹은 기업파산을 구실로 로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거나지어는 고용기한이 되기 전에 해고시키는 등 자본가들의 고용로동계약위반행위는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패륜패덕의 자본주의사회에서자본가들과 로동계급은 계급적으로 대립되여있으며 자본가들은 저들의 리익실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로동자들에 대하여서는 각종 음모와 교활한 방법으로 제거해버린다.

현실적으로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임 금인하 등 기업체들이 고용로동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부지기수이다.

계약의 효률적위반론은 이러한 독점기업체들의 고용로동계약에 대한 위반행위를 《효률성》이라는 미명아래 비호하고 생존권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무마시키는데 복무하는 반동적인 리론이다.

보다 더 많은 리윤을 추구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자본가들의 행위를 효률이라는 미사려구로 분식하는 계약의 효률적위반론은 인민대중에게 초보적인 물질생활조건, 로동조건도 보장되지 않는 현대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고 그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반동적론조로 밖에 달리는 될수 없다.

가족법률제도에 대한 경제분석법학적견해

민사법률제도에 대한 경제분석법학적견해의 부르죠아적성격, 반인민적성격은 민사법률제도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가족법률제도분야에서도 나타나고있다.

가족법률제도에 대한 경제분석법학적견해는 가정에 대한 반동적인 부르죠아적관점에 기초하고있다.

반동학자인 퍼스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분석은 가족이 단순히 소비단위가 아니며 보다 중요하게는 사회의 한 생산단위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시작된다고 하면서 가정을 하 나의 경제적실체로 묘사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는 가정형성의 기초인 결혼 역시 자유로운 계약적관계로서 상업적련합과 근사하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그러한 《결혼시장》 이 존재한다는것, 결혼은 본질에 있어서 개별적사람들이 생산적인 가정을 이룰수 있는 결 혼배우자를 찾는 고심어린 탐색과정이라고 제창하였다.

그는 법이 결혼당사자들이 결혼을 할 때 자연히 생각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정의함으로써 협상할 걱정을 덜어주게 되며 따라서 계약결혼의 존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보편적현상인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의 법칙을 그대로 반영한 계약결혼을 합리화하였다.

퍼스너의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가족성원들사이에서 도 극단한 개인리기주의, 황금만능의 법칙이 그대로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썩어빠진 가정생활관계를 합리화하려는 반동적인 궤변이다.

부부간의 관계는 철저히 인격적 및 도덕적관계로 되여야 한다. 부부관계가 인격적 및 도덕적관계로 이루어질 때만이 사회의 세포인 가정이 진실한 사랑에 기초하여 공고하게 이루어질수 있다. 진실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그 어떤 경제적타산이나 리해관계에 따라 결합되는 남녀간의 결합은 절대로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고 가 족성원들사이의 불신을 필연적으로 조성한다.

물론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는 그에 해당한 재산관계가 존재하게 되며 남녀사이의 결혼도 재산적결합을 중요한 기초의 하나로 하여 형성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 생활에서의 재산관계는 가족성원들의 고상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비롯한 경제문화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관계로 되여야 하며 그것이 가정생활의 기본관계로 되여서는 안된다. 그러한 가정재산도 가족성원들사이의 사랑과 화목한 생활, 상대방을 존중하는 참 다운 인격적 및 도덕적관계를 도모하는데 리용되고 소비될 때만이 참다운 인간생활에 이 바지되는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정과 도덕적신뢰, 배우자들의 완전한 평등원칙에 기초하는 부부사이의 참다운 인격적관계는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사회의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를 단순히 돈을 벌고 소비하는 금전관계로만 보는 부르죠아경제분석 법학에서는 부부사이의 참다운 인격적 및 도덕적관계를 외면하고 재산관계에 대하여서만 강조함으로써 개인리기주의를 더욱 조장시키고 합리화하고있다.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자들이 《결혼시장》이요 《생산적인 가정》이요 하면서 현대자본 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결혼과 가족성원들사이에서 재산을 둘러싸고 수시로 벌어 지는 비인간적이며 비도덕적인 범죄행위들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합리화하려고 교활하 게 책동하여도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온갖 패륜패덕이 란무하는 자본주 의사회를 결코 미화할수는 없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리기주의적목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계약결혼과 그에 기초한 가정생활은 온갖 사회악을 낳는 온상으로 되고있다.

가족관계가 철두철미 금전관계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신의 재산적리해관계에 저촉될 때에는 가정을 파괴하고 리혼하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으며 지어 가족, 친척호상간 재산적리익을 놓고 끔찍한 살인행위들이 무시로 일어나고있어 사람들을 경악시키고있다.

혈연적으로 런결되여있는 가족, 친척들사이의 인격적, 도덕적관계가 재산적리해관계에 의하여 완전히 무시되고 오직 돈에 의해서만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사회야 말로 인간으로서의 미덕은 고사하고 동물계에서 존재하는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인간생활. 가정생활의 불모지이다.

비인간적이며 비도덕적인 자본주의사회의 가정생활현실과 그 사상적바탕인 극심한 개인리기주의를 《효률》이요 《생산성》이요 하는 감언리설로 변호하려는 경제분석법학적견해야말로 과학의 외피를 쓴 반동사상이며 사람들호상간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활할것을 요구하는 인간의 집단주의적본성을 외곡하는 궤변으로 된다.

이처럼 경제분석법학이 각이한 민사법률제도에 침투하여 수학적 및 경제학적인 술어나 도식을 도용하여 자본주의사회를 변호하려고 하여도 그 반동성과 기만성을 가리울수없으며 더우기 자체의 사회경제적모순으로 하여 파멸의 구렁텅이에로 빠져들어가고있는 자본주의의 운명을 바꾸어놓을수는 없다.

자본주의는 인민대중의 사회적본성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회로서 반드시 멸망하며 그러한 반인민적인 사회를 변호하는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도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실마리어 민사법률제도, 부르죠아경제분석법학